

<보험개발원 생보 제2008-0338호(2008.07.30)>

**무배당 프리미엄변액유니버설보험
보통보험약관**

무배당 프리미엄변액유니버설보험 보통보험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기본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기본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

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액보험”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2. “일반계정”이라 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 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회사는 제3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합니다.
3. “특별계정”이라 함은 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4. “펀드”라 함은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5. “월계약해당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일부터 한 달씩 경과되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6. “기본보험료”라 함은 일시납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감액신청이 있을 시에는 감액신청 직후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7. “추가납입보험료”라 함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 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은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8. “월공제액”이라 함은 해당월의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매월 계약해당일에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9.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단, 특약보험료 제외).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의 최저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제4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2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10.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 또는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별표 4 “재해 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재해”라 합니다)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는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11.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이라 함은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12. “특별계정 운용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13. “특별계정 수탁보수”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 4 조 약관고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

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서 부분에 갈음하여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약

가.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계약

나. 사망 또는 장애를 보장하는 계약으로서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동일하거나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계약

다. 신용생명보험계약

라. 계약자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금이 비영리 법인에게 기부되는 계약

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송부하고,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음성녹음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5 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 시까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3.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감액을 신청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신청한 경우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제3조(용어의 정의) 제10호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신청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직후 기본보험료/감액신청직전 기본보험료)

「감액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에 중도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45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2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신청시 이 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계약의 소멸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보험나이

- ①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0 조 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기본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기본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④ 청약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추가납입보험료

①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의 성립 후부터 제3조(용어의 정의) 제7호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12 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
 2. 추가납입보험료 중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
- ② 제1항에서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보험료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기본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는 예정이율로 적립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을 적용합니다.
 2.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단, 납입일과 납입확인일이 상이한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일은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확인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撤回)한 경우에는 제2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 13 조 월공제액의 공제

매월 계약해당일에 제3조(용어의 정의) 제8호에 의하여 월공제액을 공제합니다.

제 14 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제3조(용어의 정의) 제8호에 의하여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그 월계약해당일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달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2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5 조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4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 기준으로 특약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제외)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월공제액을 “예정이율+1.0%”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이상의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미납된 월공제액을 공제한 후 각 펀드에 투입합니다.

③ 해지계약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며, 부활(효력회복)시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부활(효력회복)시까지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추가납입보험료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에서 월공제액을 “예정이율+1.0%”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 이후에 부활(효력회복)승낙이 이루어질 경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일+제2영업일」의 「제30조(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 제2호(좌당 기준가격)에서 정한 좌당 기준가격(이하 “기준가”라 합니다)」을 적용하여 부활(효력회복)승낙일을 기준으로 이체합니다).

④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0조(기본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36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16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제3조 (용어의 정의) 참조)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제 17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사망포함)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④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보험금은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날 또는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로 진단확정된 날의 보험금액으로 합니다.
- ⑤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합니다.
- ⑥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합니다.
- ⑦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합산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제7항 및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서 동

일한 재해의 경우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를 말합니다.

제 1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20 조 해약환급금

- ① 제7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 의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신청일+제2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외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21 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22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4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 23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특별계정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제 24 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은 펀드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 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 제2호 제‘가’목 또는 제‘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제 25 조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채권형

: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국채선물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90%이상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2. 혼합형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에 펀드순자산의 30%이내에서 투자하

고,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국채선물 등)과 유동성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70%이상 투자하는 펀드

3. 배당플러스혼합형

: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국채선물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상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에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식투자 부분은 고배당 우량주 위주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통해 KODI(배당지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4. 가치주혼합형

: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국채선물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상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에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식투자 부분은 내재가치대비 저평가(저PBR, 저PER 등) 우량주 위주의 장기 안정적 수익창출을 통해 KOSPI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5. 시스템혼합형

: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국채선물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상 투자하고,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및 상장지수투자신탁(ETF), 주식관련파생상품(주가지수선물 등)에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식투자 부분은 펀드매니저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시스템매매를 통해 수익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

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6. 글로벌혼합형

: 국내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채권관련파생상품(국채선물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50%이상 투자하고, 미국·유럽 등 해외 우량주식 및 상장지수투자신탁(ETF), 해외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5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식투자 부분은 MSCI지수 등 해외 글로벌 투자지표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7. 성장주식형

: 주식(코스닥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주가 지수선물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90%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및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 및 채권관련파생상품(국채선물 등)과 유동성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

8. BRICs스타주식혼합형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속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수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포함)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수익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순 자산(NAV)의 4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브릭스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예 : MSCI BRIC)의 수익률을 초과달성하거나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9. 아시아퍼시픽스타주식혼합형

: 아시아 태평양(일본제외) 지역에 속하는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및 수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포함) 등에 펀드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 수익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펀드
순자산(NAV)의 4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
특히, 주식투자부분은 아시아·태평양(일본제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수(예 : MSCI-AP ex Japan(KRW))
의 수익률을 초과달성 하거나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
② 제1항의 펀드의 유형은 이 보험의 ‘변액보험운용설명서’에서
정한 펀드별 운영방침에 따라 구성합니다.

제 26 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제25조(펀드의 유형)에 의한 펀드
중 회사가 정한 범위 이내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해야 하며, 펀드별 편입비율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펀드를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추가납입보
험료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도 설정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별
도 선택이 없을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펀드별 편입비율은
제1항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산투입됩니다.
- ④ 제2항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변경은 보
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 ⑤ 계약자는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가 정
한 방법에 따라 펀드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
며, 펀드별 보험료 편입비율과는 별도로 계약자적립금만의 변경
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에 의한 펀드의 변경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2
조(펀드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 ⑦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
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6항에
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

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⑧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7 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①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를 말하며, 이하 “펀드자동재배분 주기”라 합니다)마다 계약자가 정한 펀드별 편입비율(계약자의 별도 선택이 없을 경우 제2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1항에서 정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니다. 단, 펀드 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 도중에 계약자가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펀드별 편입비율의 변경은 보험년도 기준 연12회 이내의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보험년도 기준 연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선택을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자적립금의 0.1% 이내(5,000원 한도)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28 조 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

①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유지비 및 수급비 제외)는 전액 채권형 펀드로 투입되고, 추가납입보험료(유지비 및 수급비 제외)를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은 계약자가 지정한 날부터 평균분할투자기간(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을 말하며, 이하 “평균분할투자기간”이라 합니다)동안 매월 제2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2항

에서 정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자동 투입되며,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 달에는 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이 모두 투입됩니다. 단, 평균분할투자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② 제2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및 제27조(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 변경 또는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하거나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제3항의 경우 계약자는 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을 투입할 펀드의 유형과 펀드의 편입비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자가 펀드의 유형이나 펀드의 편입비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2항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로 일시에 투입합니다.

제 29 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①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각 펀드별로 적용합니다.

제 30 조 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

펀드의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펀드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펀드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펀드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구좌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펀드의 순자산 가치

$$\text{좌당 기준가격} = \frac{\text{펀드 총좌수}}{\text{단, 당일 펀드의 순자산가치} = \text{당일 펀드의 총자산} - \text{특별계정 운용보수} - \text{특별계정 수탁보수} - \text{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제 31 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86조 제2항에 의한 제비용 및 보수, 동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회계감사비용, 제100조 제5항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제공비용 및 제149조에 의한 투자증권 평가비용 등을 펀드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 32 조 펀드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당해 각 펀드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 1개월간 계속하여 펀드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각 펀드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펀드를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26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제 33 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 34 조 계약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35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을 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⑤ 제34조(계약전 알릴의무)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36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37 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38 조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의 경우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사망시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39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40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함

니다.

제 41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42 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4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제35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④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제 43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항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44 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

룹니다.

1.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 45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으며,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을 신청한 경우 최저사망보험금 계산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신청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인출신청직전 계약자적립금-인출신청금액)/ 인출신청직전 계약자 적립금}
- ③ 제2항의 「인출신청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신청전에 감액 및 인출이 발생한 경우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적립금에서 인출가능합니다.
- ⑤ 제1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직후 계약자적립금은 기본보험료의 20%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제 46 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

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대출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출이율 - 1.5%』로 계산된 금액을 더하여 적립합니다.

⑤ 보험계약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상환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상환일+제2영업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하며 「상환일+제2영업일」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7 관 분쟁조정 등

제 47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48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9 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50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1 조 보험금액 등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줍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52 조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시공시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1조(자산운용보고서)에 의한 자산운용보고서를 계약자에게 매 3개월마다 제공하며, 계약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유 발생시 대한생명 홈페이지(www.korealife.com)에 공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통보 또는 당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02조(부실자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3. 신탁약관의 변경(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와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4. 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5.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 53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54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55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부가되는 특약의 경우 특별계정 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보험금 지급기준표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별표 3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애지급률이 80%이상인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10% +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의 계약자적립금

- 주) 1. 계약자적립금은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다.
2.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3조(용어의 정의) 제9호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42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16조 제1항)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0조 제1항)	「해약환급금 청구일+제2영업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20조 제2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장애분류표

1 총칙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한시장애의 장애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애에 다른 장애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 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 기능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 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보험대상자(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콧바퀴의 결손

- 1) “콧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콧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콧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애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 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 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장해의 분류	지급률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해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口,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ㄺ, ㄻ)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애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 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

- 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 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 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 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 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 (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 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 (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 (1발가락 마다)	5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 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발가락 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

- 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 · 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 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 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 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 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 · 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 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 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㉞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 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 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별표 4 】

재해 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결핍(X53)
 - 수분결핍(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상)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불의의 물에 빠짐(W65~W74),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49, U80~89)에 해당되는 질병

※ () 안은 제5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07-4호, 2008.1.1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6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K1.2) 약관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해당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만 적용합니다.

이 특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전환일 현재 보험대
상자(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K1.2) 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전환전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계약자는 이 특약을 청약할 때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전환전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사고보험금을 제외한 중도보험금 미수령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한 금액, 이하 “지급금”이라 합니다.)의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의 전부를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자에게 연금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를 발행하여 드립니다.
- ④ 전환신청 당시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된 지급금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제3항에 따라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대상자(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연생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解

止)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9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종신까지이며, 확정연금형의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이 특약의 부가시에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범위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5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를 일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전계약 약관을 준용하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전환전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 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확정연금형의 경우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에 살아있을 때)에 생존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생존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8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특약에서 책임준비금 및 생존연금 계산시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9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2.5%(단,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 2.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8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 4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0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또는 주민등록초본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11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별표 2 참조)과 같습니다.

제 5 관 기타사항 등

제 12 조 전환전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별표 1】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급부 명칭	지 급 내 용	
생존 연금	1. 종신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이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보증, 20년보증)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2. 확정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시에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5년, 10년, 15년, 20년)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지급
	3.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이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지급(단, 보험대상자(피보험자)사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

- 주) 1. 연금개시일이란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단,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장개시일부터 1년경과후 이 특약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2.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특약이 부가된 경우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특약을 포함)의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 생존보험금 전부를 말합니다.
3.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2.5% (단,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10년 초과시 2.0%)로 합니다.
4.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생존연금도 변동합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대상자(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7. 생존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별표 2 】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11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생존연금 (제6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7일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특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 기간:1%

구 분	적 립 기 간	지 급 이 자
생존연금 (제6조)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해약 환급금 (제9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 1년 초과 기간: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 계산에 의하며, 소멸시효(제7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